

# 2025년 판교 창업존 입주기업 연장평가(3차) 공고

판교 창업존 입주기업의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, 입주 연장 평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8일  
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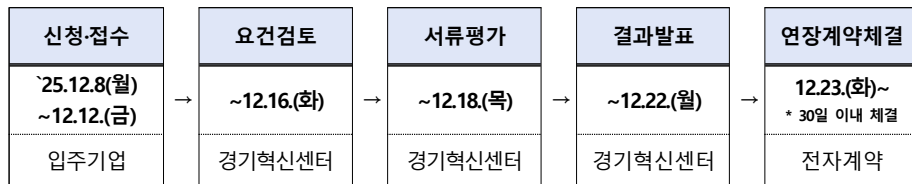
※ 본 공고는 판교 창업존에 입주한 "입주기업" 연장평가 공고입니다. 서류평가를 통해 입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여, 기 입주 공간의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합니다.

\* 연장 모집공고 기간 내 입주자의 업력이 7년이 경과한 경우 입주기간 연장 신청에 참여할 수 없음  
\*\* 4. 안내사항 - 신청 제외 대상 내용 참고 ※

## 1. 연장평가 개요

- (평가목적) 창업존 입주기업의 계약 만료 시점 도래에 따라 연장 평가를 통해 우수 기업을 선별하여 지속적인 성장 지원
- (평가대상) '26년 1월~6월 내 임대 계약기간(기본 2년) 만료 예정인 창업기업 중 입주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
  - \* 판교 창업존 운영지침 제14조(조기졸업) 제②항에 따라, 계약기간 만료일 이내에 입주자의 업력이 7년이 경과한 경우 입주기간의 연장 신청에 참여할 수 없음
- (연장기간) 기 입주공간의 임대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계약기간 갱신
  - \* 판교 창업존 운영지침 제8조(입주 계약 갱신) 제②항에 따라, 갱신이 허용되는 경우 갱신기간은 1년으로 함

## (평가절차)



\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## 2. 신청 및 접수

- (공고 및 접수기간) '25. 12. 8.(월) ~ 12. 12.(금) 10:00 까지
  - \* 입주기간 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[첨부2] 퇴거확약서 이메일(sey@ccei.kr) 제출 ※
- (신청방법) 이메일(sey@ccei.kr) 신청·접수
- (제출서류)

※ ① ~ ⑤번 파일 순서대로 정리하여 IR 자료와 함께 이메일 제출  
※ ③, ④, ⑤, ⑥번 파일은 모두 공고일(25.12.8.) 이후 발급분만 인정  
\* 파일명 : 기업명.pdf

- ① (필수) 연장신청서 1부 (연장신청서 양식 확인)
- ② (필수) 성과보고 및 사업계획서 1부 (연장신청서 양식 확인)
- ③ (필수) 국세 완납증명서 1부
- ④ (필수)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- ⑤ (필수) 사업자등록증 1부
- ⑥ (필수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
- ⑦ (필수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
- ⑧ (선택) 투자계약서 1부
- ⑨ (선택) 그 외 기타 성과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(연장신청서 확인)
- ⑩ (필수) IR 자료(\*.ppt 또는 \*.pdf)

<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안) >

(단위 : 점)

3. 평가 세부내용

□ (평가방법)

① 요건검토 : **6개** 요건 모두 충족 필수

< 요건검토 항목 >

구 분	세부내용
1) 국세 및 지방세	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
2) 휴폐업	- 휴폐업 여부
3) 창업기업	-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여부 확인
4) 업종	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영위 확인
5) 주소지	- 창업존 주소 등록 및 현재 유지 여부
6) 임대·관리비	- 창업존 임대관리비 미납 여부 (연장평가 <b>절수마감일까지</b> 연체료를 포함한 전액 완납 시 요건충족)

② 서류평가 : 요건검토를 통과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실시

- (평가운영) 외부 전문가 5인 내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자료 기반 서류평가 시행
- (평가방법) 평가위원 평균 점수 **70점 이상** 득점 시 연장 승인
- (평가지표) 창업존 활용 및 참여도, 입주 후 성과, 향후 계획 등

항 목	세부내용	배점	비고	
창업존 활용 및 참여도(50)	창업존 출입일수(20) * 2024.10.01. ~ 2025.09.30 ** 영업일 기준 : 245일	1년간 출입율 80% 이상	20	정량 평가
		1년간 출입율 60% 이상~80% 미만	15	
		1년간 출입율 30% 이상~60% 미만	5	
		1년간 출입율 30% 미만	0	
	임대료 연체 횟수(15) * 2024.10월 ~ 2025.10월 ** 청구분 기준	입주기간 내 임대료 연체 없음	15	
		입주기간 내 임대료 연체 4회 이하	10	
		입주기간 내 임대료 연체 5회 이상	5	
		입주기간 내 임대료 연체 10회 이상	0	
	창업존 지원사업 참여 이력(5) * 2024~2025년(공고일 기준) 프로그램 지원 이력 기준	2회 이상 참여	5	
		1회 참여	3	
		지원 이력 없음	0	
	창업존 네트워킹 참여 이력(5) * 2024~2025년(공고일 기준) 행사 참여 이력 기준	2회 이상 참여	5	
		1회 참여	3	
		참여 이력 없음	0	
창업존 인프라 이용 현황(5) (글로벌 테스트베드, 통번역센터, 비즈니스지원단, 원스톱서비스 등)	2회 이상 이용	5		
	1회 이용	3		
	이용 현황 없음	0		
입주 후 성과(20)	- 전년도 대비 매출 증가율 * 수출 포함 - 입주 후 고용인원 증가율 - 투자유치 실적 - 입주 후 기타 성과 (글로벌 시장 진출, 업무협약 체결, 바이어 발굴, 수상, 사용자 수, 정부사업 선정 등)	20	정성 평가	
지원필요성 및 향후 계획(30)	- 입주 기간 연장의 필요성 - 입주 연장 시 기간 내 사업추진계획 (구체성, 체계성, 실현가능성) - 향후 창업존 입주기업 간 협력 계획 - 향후 입주 사무실 사용계획 - 향후 창업존 공간 활용계획 등	30		

## 4. 안내사항

### □ (신청 제외 대상)

- **연장평가 신청 자격**
  - 공고 기간 기준, 업력 7년 미만 기업은 연장평가 신청 가능
- **연장 입주 기간 제한**
  - 원칙 : 연장평가 통과 시, 1년 연장 입주 가능
  - 예외 : 연장 입주(+1년) 기간 중 업력 7년 초과가 예상되는 기업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입주 기간 제한
- ※ 예시
  - 회사설립일 : 2019년 2월 1일
  - 기본 2년 계약기간 : 2024년 3월 2일 ~ 2026년 3월 1일인 기업
    - 1) 정상 연장기간 : 2026년 3월 2일 ~ 2027년 3월 1일
    - 2) 제한 적용 시 : 2026년 3월 2일 ~ 2026년 12월 31일
- **제한 사유 : 2026년 2월 1일 자, 업력 7년 도래로 인한 조치**
- 근거 규정

### [판교 창업존 운영규정]

제14조(조기졸업)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는 조기졸업 신청서를 조기졸업 사유 등을 포함한 문서형태로 제출(서면 또는 이메일)하여야 한다. 단, 입주자의 업력이 7년이 경과한 경우 입주기간의 연장 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.

### □ (유의사항)

-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입주기간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계약은 갱신되지 않고, 임대기간 만료일에 종료됨
-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에 위배 되거나,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취소,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### □ (평가결과)

- (연장승인) 연장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
  - \* 입주기간 : 기본 2년 + 우수 기업에 한해 연장평가 통과시 1년 연장(최대 3년 입주 가능)

\*\* 계약체결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

### [판교 창업존 운영규정]

제11조(입주기간 및 연장) ①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1년간 연장 할 수 있다. 단, 정부정책 변동에 따라 창업존 예산의 축소, 관리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으로 창업존 전체 또는 일부를 폐소할 경우 입주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.

⑤ 계약 갱신이 결정된 때에는 계약입주자와 관리기관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위 기간 내에 입주자가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아 연장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입주계약은 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
- (연장 미승인) 기 입주계약서상, 임대기간 만료일에 종료 및 퇴거
  - \* 계약종료에 따라 입주 기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사전 합의에 의해 퇴거일 유예 가능

### □ 문의처

- (담당자)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허브팀 이세미 주임
- (연락처) 031-780-9067 / [semy@ccei.kr](mailto:semy@ccei.kr)